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4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 엄태영 · 박충권 · 이만희

박덕흠 • 정동만 • 최형두

김정재 • 권영진 • 조지연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3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5의2
조에 따른 <u>소상공인에 대한</u>	소상공인 및 「중소
<u>지원</u>	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사

	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을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